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센로라 하며, 영문으로는 ASENRO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광고 대행업
2.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3.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4. 전자상거래 소매업
5.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6. 기타 통신 판매업
7. 상품 종합 중개업
8. 상품 종합 도매업
9.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10. 유아용 의류 도매업
11. 속옷 및 잠옷 도매업
1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13. 신발 도매업
14.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15.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16.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17. 통신 및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9.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20.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21.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22. 커피 및 차류 도매업
23. 조미료 도매업
24.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2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26.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27. 남자용 겉옷 소매업
28. 여자용 겉옷 소매업
29. 속옷 및 잠옷 소매업
30. 유아용 의류 소매업
31. 기타 의복 소매업
3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33. 신발 소매업
34.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5.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제2조 36. 가전제품 소매업
37.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38. 통신기기 소매업
39.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0.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1.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4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43.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4. 일반 창고업
45. 택배업
46.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48. 무형 재산권 임대업
49. 경영 컨설팅업
50. 지주회사
51. 무역업
52. 중고 상품 소매업
53.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5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scenr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9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遲滯株金)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 (過怠金)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의 명의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식의 분할·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6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7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8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 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3 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감사 1 명 이상을 둔다.

제21조 (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4조 (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20조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 개월간 월평균 급여액 × 근속연수 × 5 배를 한도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상여금) 이사와 감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매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총액은 지급 당시 월 급여액의 1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계산(計算)

제30조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3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3조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4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매년 6 월 30 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당해 결산기의 결산 결과 순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간배당 기준일 사이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그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6 장 부칙

제36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38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6 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아센로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이에 기명날인하다.

2026년 10월 21일

주식회사 아센로

(주소)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5길 43 에이동 222호223호(수유동, 수유벽산아파트
상가)

발기인 개인정보 비공개